

## 복지용구 급여확인서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|
| ① 수급자 일반사항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|
| 수급자성명               |      | 생년월일     |  |
| 장기요양등급              |      | 장기요양인정번호 |  |
| 유효기간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|
| 연한도액 적용구간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|
| ② 복지용구 급여내용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| 구입품목 | 대여품목     |  |
| 사용이 가능한<br>복지용구     |      |          |  |
| 사용이 불필요한<br>복지용구    |      |          |  |
|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<br>복지용구 |      |          |  |

발행일자 :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(직인)

전화번호 :  
주 소 :  
홈페이지 : [www.longtermcare.or.kr]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

### 유의사항

- 수급자는 연한도액 적용구간 동안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위 품목 중 발행일 현재 타 법령 또는 복지용구로 이미 급여된 품목은 그 사용 가능 햇수동안 같은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수 없습니다.
- 시설급여(입소기간)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며, 의료기관(병,의원 등)에 입원하실 경우,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 리프트는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에는 안전손잡이 10개,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·미끄럼방지액 5개, 간이변기(간이대변기·간이소변기) 2개, 자세변환용구 5개, 요실금팬티 4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.
-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품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단에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,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